



조계종 원로회의는 21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열빈자 사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 '98 징계사 특별법 법리적 논란 일듯

## 원로회의 '열빈자 사면 재촉결의문' 배경

### ●결의문 배경

열빈자 사면을 재촉한 원로회의의 결의문 내용을 보면 중앙종회의 사면 부결을 종정스님과 원로회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다.

특히 결의문 내용 가운데 '종단화합의 중차대한 과제가 일부의 이해에 의해 저해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일부'는 열빈자 사면을 부결시킨 종회의 특정 계파를 지칭하고 있어 사실상 결의문 전체가 종회에 대한 강한 '질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사실 원로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종회의 열빈자 사면 부결에 대해 원로회의의 의장 도원스님 등 집행부가 상당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가 아닌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난번의 유시가 아직도 유효하고, 그 유시의 이행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형식상으로 보면 결의문이 유시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오히려 유시보다 몇 배 이상 강한 어조를 반영하고 있다.

### ●특별법·종헌 개정 문제없나

결의문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98년 종단사태 관련 열빈 징계사 사면, 복권, 경감을 결정하는 처리 방법이다. 원로회의가 99년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이들의 징계를 다시 심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단 지난 4월 종회에서 종헌 개정을 통한 사면이 무산됨에 따라 다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호계원은 특별법에 따르는 특별심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재심사는 호계원의 결정사안이며, 재심사를 통해 열빈 징계가 제적이하의 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열빈자 사면안이 종회에 상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98년 열빈자 징계는 확정됐다'며 특별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해온 총무원 집행부와 호계원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문제해결에서 서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

는 월탄, 남현, 윤성, 정영 등 4인은 재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열빈 징계사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종회 각 계파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득실을 달리하고 있고, 지난 4월 종회 때 계파간의 합의가 깨졌으며 상호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열빈 징계'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 경우 총무원 집행부와 종회간, 종회 각 계파들 간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도 있어 종헌개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계 일각에서는 세속법의 시행에 해당하는 '열빈' 징계가 불교의 자비정신에 맞지 않고, 종헌 개정을 통한 열빈자 사면 자체도 종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어 아예 '열빈 징계' 자체를 없애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향후 전망

만약 원로회의의 이번 사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로회의-총무원 집행부-종회-호계원 등 종단 각 권력기구간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원로회의와 종회가 대립할 경우 치우칠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종단대화합이라는 명제 이전에 '막강 권위'를 휘두르는 중앙종회에 대한 원로회의의 '어름'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불교계 자율·재산권 보호 초점

## 조계종, '전사법 개정안' 교계 입장 제시

문화관광부 전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계종의 기본 입장은 문광부의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춘다는 취지는 인정하되 불교의 재산권 및 자율권을 보장하고,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행위에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부산 선암사 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계종의 이같은 요구는 불교계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불교관계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전사법이 불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 보존'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찰 자연환경과 재산권이 침해받아온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조계종이 우선 요구한 것은 국가기관의 전통사찰 재산 수용 등의 행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 '협의' 하도록 규정된 것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광부 개정안대로 '협의'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전통사찰 소속대표단체 대표

자 동의 없이도 국가기관의 수용이 가능하며, 결국 불교계의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종단 간 분쟁으로 소속대표단체를 확립할 수 없는 경우 문광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바로 불교계의 자율권

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조계종은 설명했다. 한마디로 불교 재산관리를 문광부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 문광부장관에 의해 재산관리인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재산관리인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재산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부동산의 대여와 담보제공 허가를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다 하더라도 이들 사항은 부동산의 양도와 같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문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조계종은 특히 전통사찰 경내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행위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법에 관련된

행위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규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행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과 원칙 등의 방안이 마련된 후 검토될 사안이라며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선암사가 '국가가 절터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강제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사건을 개정안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포함돼 있다.

한영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배석자 없이 40여 분간 대화를 나눠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던 분규해결에 나선 것이 아나가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법장스님 취임 이후 관례적인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분규사찰 문제를 비롯해 종단협의회 운영문제, 양 종단 간 현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총무원장이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회동을 가진 점과 '운산스님이 이날 만남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는 태고종 관계자의 전언은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실제로 조계종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불교발전 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태고종도 종단 개혁과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어, 양 종단간의 해묵은 분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양 종단의 총무원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 해결 의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손을 맞잡고 있다.

## 조계-태고종 분규 해결 '물꼬?'

### 법장·운산 두 총무원장 40여분 은밀회동

지를 보였지만 이후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 종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화합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계종과 태고종의 오랜 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어 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 종단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조계종단 대화합을 위한

# 팔공산 동화사 결집 대법회

### 결집대법회행사 일정 및 주제발표 안내

- 일 시 : 2003. 6. 6 (금) 10:00~18:20
- 장 소 :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설립전
- ▷ 초청인사 : 지성 큰스님(동화사 주지)
- ▷ 증 명 : 지관 큰스님(전 동국대 총장)
- ▷ 법 어 : 인환 큰스님(전 동국대교수)
- ▷ 사 회 : 오 흥선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 주제 1. 僧伽에 있어서 制裁問題에 대한 研究

- 승갈마의 절차와 죄의 확정을 중심으로 -

□ 발표 : 白道守 (동국대 강사)

□ 논평 : 신 성현 (동국대 교수), 대성스님(은하사 주지)

#### 주제 2. 滅淨度를 통해서 본 승단의 갱신해결의 방법

- 刪別리를 멸정건도를 중심으로 -

□ 발표 : 李 慈郎 (동국대 강사)

□ 논평 : 혜능스님(해인사 율원장), 혜원스님(동국대 교수)

#### 주제 3. 종단개혁과정과 사면·복권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 발표 : 김 응철 교수팀 (중앙승가대학교)

□ 논평 : 차차석(현대불교신문사 논설위원),

태원스님(중앙승가대교수)

#### 주제 4. 宗憲·宗法上の 戒律에 비추어 본 敎免/和合과 그 문제점

□ 발표 : 덕산 (한국불교교단문제연구소)

□ 논평 : 박 연철 (대한변협전인권위원장), 김 민남 (경북대 교수)

#### 주제 5. 近·現代佛敎와 僧侶大會

□ 발표 : 김광식 (부천대 교수)

□ 논평 : 공종원 (불교언론인회 회장)

#### 주제 6. 종교단체내부분쟁과 사법심사의 적부

□ 발표 : 박 연철 (대한변협 전 인권위원장)

□ 논평 : 주호영(변호사)

#### ◎ 종합토론 및 논평 사회

태원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성우스님(파계사주지), 목 정배(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총장), 법타스님 (은해사주지), 해주 스님(동국대교수), 여익구(민족문화정책연구소)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때, 불법의 전승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법체 청안하십니까? 최근 종단화합을 위한 사면이 단행된 것은 중정여해를 비롯한 원로·종정스님들의 화합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과 자비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 9교구 동화사에서는 아직도 미진한 사면문제에 대한 교구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종단 화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팔공산 결집 대법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종단내 사면/화합문제는 동화사 교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각계각층의 견해를 듣고자 팔공산 결집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아사비구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비사리에 700 비구가 모인 가운데 장로들의 대론과 대중의 승인으로 해결된 결과가 불교 교단사상 너무도 유명한 제 2결집이라는 것을 모르는 불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팔공산 동화사 결집 대법회의 사면논의를 계기로 조계종단 대화합과 석존이래 전승되어 오고있는 법통을 공고히 하는 전기가 마련되었고, 나아가 국민통합의 불교적 이념이 태동하는 대법회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7년 5월

동화사 주지 지성 합장